

**학사운영규정(UCS-B-501)(개정일자 2026. 1. 1.) 제37조**

**제37조(출석인정)**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인정신청서(양식B501-8)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20.9.1.>

1.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<개정>(2018.12.01.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출산	본인	20
	배우자	5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
<개정 2020.7.1>

2. 본인의 긴급수술, 중병으로 인한 경우 3주일 범위 내에서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
3. 각종 병사관계(징병검사, 근무소집 등)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간
4.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경과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균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<개정 2020.1.1.>
5.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교무처장이 인정한 기간 <개정 2023. 3. 1.>  
<개정>(2017.11.01.)
6. 현장견학, 실습, 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(과)장이 인정한 기간. 단, 전공수업에 한하여 인정한다. <개정 2020.1.1.>
7.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, 학기당 4일 이내(단, 시험기간은 불가) <신 설> (2008. 7. 1)
8.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간 <개정 2020.9.1.>
9. 기타 천재지변,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<개정 2020.7.1>
10.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. 단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, 산업체위탁교육과정, 계약학과 과정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0.1.1., 개정 2022. 6. 1.>